

# 2020년도 제1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20. 1. 30.(수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2건(안건번호 제2020-5103호~5152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 본 사건은 모바일파일썸과 도도파일에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사건으로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의견임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20-5103호~5152호((영화 백두산(2019)' 등 62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본 심의에 상정된 50개의 안전은 62개의 영상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다수에게 전송하는 게시물에 대한 것이다. 대상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인터넷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전송되고 있음이 채증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안전의 게시물이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게시자에게 저작권 법에 의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D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전들은 모두 2019년 공개된 국내외 영상콘텐츠에 관한 사안들로서, 영화 백두산(2019), 영화 시동(2019), 영화 미드웨이(2019), 영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2019)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된 영상콘텐츠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20년 제12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2. 6.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